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09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송석준 · 박덕흠 · 신성범
김형동 · 이헌승 · 박정하
안철수 · 배준영 · 고동진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취득세 감면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인구감소억제효과가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보호 및 우대 대상인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거 이전에 따른 부담경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세 감면율을 무주택자는 현행 25%→50%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인 경우는 75%,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인 경우와 다자녀 양육자는 전액 감면하

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양육자·무주택자의 주거취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소멸현상을 막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75조의5의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하고, 무주택자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안 제75조의5제3항).

나.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5항).

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6항).

라.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신설함(안 제75조의5제7항).

마. 제75조의5 제3항부터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혹은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75조의5제8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중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를 “무주택자가”로, “인구감소지역에서”를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

는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및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이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⑦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이 법에 따른 자녀 수 계산에 있어서 친생부모의 자녀 수로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혹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자 중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체적인 추징 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4조의2제1항”을 “제74조의2제1항, 제75조의5제5항·제6항·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한 적용례)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5조의5(<u>인구감소지역</u> 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략)	제75조의5(<u>인구감소지역등</u> 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③ <u>무주택자가</u> ----- ----- ----- <u>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서</u> ----- ----- ----- ----- <u>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u> ----- ----- ----- ----- -----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

를 추정한다.

<신 설>

<신 설>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
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
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
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
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혼인한 날(「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및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
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
다)이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
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
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 전액을 면제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

<신 설>

<신 설>

령으로 정하는 청년 또는 신혼 부부가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⑦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하되, 입양된 자녀는 이 법에 따른 자녀 수 계산에 있어서 친생부모의 자녀 수로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 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인구 감소지역등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증여하는 경우 혹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취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득세를 면제받은 자 중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체적인 추징 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